

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0. 2 . 3 평창군수(환경복지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0. 2. 10
- 다. 상정일자 : 제7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조례특위(2000.2.10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환경복지과장 김근수)

가. 제 안 이 유

- 평창군 생활보호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폐지에 따라 기 적립금을 평창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통합 운용하고자 함.

나. 주 요 내 용

- 기금조성 범위확대 ⇒ 생활보호기금 적립금(안 제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- 평창군 생활보호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관리하여 오던 적립금을 동조례가 폐지되므로 평창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통합 운영하는 것임
- 이는 기금운영에 적정을 기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절차 및 자구등 별문제점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1부. 끝 .